

2025학년도 학교법인 예일유치원
방과후과정(종일반)교사 채용 재공고

학교법인예일학원이 유지·경영하는 예일유치원에서 ‘경천(敬天)·애국(愛國)·애인(愛人)’의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행복교육, 성찰교육, 글로벌 리더교육을 실현할 선생님을 모시고자 채용 공고합니다.

1. 모집과목 및 인원

모집과목	근무기간	인원	근무지
방과후과정 (종일반) 교사	2025.08.20. ~ 2026.02.28.	1명	예일유치원

2. 지원 자격

- 가.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취득 예정자
- 나.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다. 본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,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자
- 라. 신체 건강하며 수업과 학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

3. 보수 및 근무조건

보 수	근무 시간	비 고
월 급여 2,096,270원 -국가수당(처우개선비 등) 미포함 -시간외수당, 명절휴가비 미포함 -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	08:30~17:30 주5일 전일제	-교육청 임용 -국가수당 인상 시 자동 반영 -장기근속자 별도 수당

4. 담당학급 및 주요업무

- 가. 등원시 승차지도 및 교육과정보조, 오전 수업준비
- 나. 종일반 어린이 대상 담임지도 (14시~)

5. 채용 공고: 2025.07.15.(화)

6. 원서 접수기간: 2025.07.15.(화) ~ 2025.07.21.(월) 10:00까지

7. 제출방법: 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

* 이메일 접수 - yale757@sen.go.kr

(1개의 파일로 PDF 변환하여 제목과 파일명 '예일유치원 방과후과정-이름' 으로 제출)

8. 제출서류

가.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(소정양식)

나. 교원자격증 사본 1부

다. 대학,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
라.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

마. 경력증명서(경력자에 한함)

바.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
※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

9. 공개전형 방법 및 일정

순서	일정	추진 내용	비고
1	2025.07.15.(화)	채용 공고	교육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
2	2025.07.15.(화)~ 2025.07.21.(월) 10:00까지	원서 접수	이메일 접수
3	2025.07.22.(화) (예정)	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	개별 통보
4	2025.07.23.(수) (예정)	수업 실연 및 면접 심사	
5	2025.07.24.(목) (예정)	최종 합격자 발표	개별 통보

10.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: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(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.)

11. 유의사항

- 가.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나.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다.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,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마.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.
- 바.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사.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,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아. 문의사항은 예일유치원 행정실(☎3800-782)로 하시기 바랍니다.

2025.07.15.

학교법인 예일학원 이사장

<붙임>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학교법인 예일학원 이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